

19. 건축물의피난및방화기준등에 관한 규칙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8-588호 1998. 12. 14

제정 이유

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 및 방화·내화기준 등 전문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별도의 부령으로 정함으로써 건축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,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주요 골자

- 가. 건축물의 방화구조·불연재료·준불연재료·난연재료·내화구조의 기준을 정함.
- 나. 건축물의 직통계단·피난계단·관람석 출구·옥상난간·헬리포트·지하층의 구조등 피난기준을 정함.
- 다. 건축물의 내장재료·방화구획·방화문의 구조·방화벽의 구조등 방화·피난 기준을 정함.
- 라. 건축물 거실의 구조·굴뚝구조등 채광·환기·방습기준을 정함.
- 마.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의 설치기준을 정함.